

UR協定上의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한 研究

A Study on Safeguards on Agreement of Uruguay Round

李 康 斌*

- I. 序 論
- II.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動要件
- III. 緊急輸入制限措置의 適用限界
- IV.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形態
- V. 緊急輸入制限措置의 補償 및 報復
- VI. 緊急輸入制限措置의 一般節次
- VII.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이 우리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VIII. 結 論

I. 序 論

1947년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제 19조는 締約國들로 하여금 무역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輸入이 특정한 國內산업에 심각한 被害를 초래하는 경우에 특정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물품의 輸入에 대한 緊急制限措置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緊急輸入制限措置條項(Safeguard Clause)¹⁾이라고 부른다.

* 尙志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經濟學博士

1) “緊急輸入制限措置條項”(Safeguard Clause)은 國際協約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締約國으로 하여금 協約上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는 條項이라는 점에서 흔히 “逃避條項”(Escape Clause)이라고도 한다. GATT에 규정되어 있는 逃避條項으로는 제12조 國際收支防禦를 위한 輸入規制, 제18조 經濟開發에 대한 政府支援, 제19조 緊急輸入制限措置, 제28조 關稅讓許의 撤回 및 修正을 위한 節次 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GATT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첫째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요건으로서 輸入량의 증가, 예기치 않은 사태진전의 결과, GATT의무 준수 결과, 심각한 被害의 정도 등이 애매모호하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둘째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기간과 발동한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셋째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對象國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 Treatment)原則에 따라야 하느냐 또는 特定國만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選別適用問題, 넷째 多國間 監視機構의 필요성, 다섯째 報復措置의 현실적 가능성 정도 등이 그것이다.²⁾

따라서 GATT 제19조를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GATT多者間協商에서 여러차례 시도되었으나 各國의 의견대립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특히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된 東京라운드(Tokyo Round)에서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최우선적 議題의 하나로 삼아 協商을 추진했으나 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Safeguard Agreement)의 채택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결과 1986년 9월에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시작되자 GATT締約國들은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있어 透明성이 보장된 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여 協商을 전개하여 1991년 12월의 둔켈(Dunkel)草案에 緊急輸入制限措置最終協定案이 수용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1993년 12월 15일에 채택된 UR最終協定文(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의 제2부 世界貿易機構設立協定(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附屬書 1A 商品交易協定(Annex 1A Agreement on Trade in Goods)에 첨부된 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Agreement on Safeguards)이 성립되었다.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은 前文, 9節, 38項 및 附屬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GATT 제19조(특정한 物品들의 輸入에 관한 緊急措置)의 규정을 명료화하고 재강화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에 대한 多者間規制를 재설정하고 그러한 規制를 일탈한 조치들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또한 國際市場에서 산업의 構造調整의 중요성과 경쟁을 더욱 提高하고자 하였으며, 더욱이 UR最終協定文의 모든 會員國들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포괄적인 協定이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³⁾

2) 朴晚承·王載烈·朴基洪, "GATT를 중심으로 한 國際貿易秩序의 展開方向과 우리의 對應",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1984, PP.166~168.

3)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한 문제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물론 先進國내부에서 美國, 日本, EU간에도 選別適用, 報復措置, 産業構造調整 등에서 커다란 견해차이를 보임으로써 각 그룹간의 異見을 協商을 통하여 조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

本稿에서는 위와같이 UR協商에서 채택되어 곧 發效하게 될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에 규정된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내용을 發動要件, 適用限界, 形態, 補償 및 報復, 一般節次 등으로 나누어 既存 GATT 제19조 規定과 비교 설명한 후, 이러한 UR協定上の 緊急輸入制限措置制度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 緊急輸入制限措置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動要件

1. 一般的 要件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은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일반적 發動要件으로서, “會員國⁴⁾은 당해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그리고 同種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國內産業에 심각한 被害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威脅이 있을 정도의 상황하에 同會員國의 영토내로 輸入되고 있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만 당해물품에 대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이와같은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일반적 發動要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絶對的 또는 相對的 輸入量의 增加

UR協定の 會員國이 특정 輸入物品에 대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하기 위한 첫째요건은 당해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輸入이 되었어야 한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 GATT 제19조는 단지 “증가된 수량으로 輸入”이라고 규정하였으나, UR協定에서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absolute or relative)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輸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GATT規定과 다르다. 여기서 “절대적 輸入量의 증가”라 함은 예컨대 輸入이 종전 年間 1,000개에서 1,300개로 量的인 면에서 증가된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 輸入量의 증가”라

4) 關稅同盟(Customs Union)은 單一體로서 또는 한 會員國을 대신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할 수 있다. 關稅同盟이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할 경우에는 本協定下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결정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을 關稅同盟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한다. 緊急輸入制限措置가 한 會員國을 대신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결정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은 그 會員國에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하며, 措置는 그 會員國에 한정되어야 한다(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항 註1).

5)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항

함은 예컨대 輸入量이 종전 年間 1,000개에서 1,100개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增加率 10%가 국내생산의 增加率 예컨대 2~3%에 비하여 현저히 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⁶⁾

또다른 예를 들면, 어느물품의 年間 國內消費量이 10,000개인데 國內生産量이 9,000개이고 輸入量이 1,000개인 경우에 國內消費量이 5,000개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輸入量이 不變이거나 600개로 감소하였다면 절대적 輸入量의 증가는 없었지만 國內消費量에 대한 輸入量의 비중은 최초 10%에서 20%(輸入量 不變인 경우) 또는 12%(輸入量이 600개로 감소한 경우)로 높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상대적 輸入量의 증가로 인정되어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을 위한 첫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⁷⁾

이와같이 상대적으로 輸入量이 증가한 경우에도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는, 실제로 輸入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물품에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히 전반적으로 세계경제여건이 惡化되는 경우에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惡用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⁸⁾

(2) 國內産業에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

UR協定の 會員國이 특정 輸入物品에 대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하기 위한 둘째요건은 당해물품의 輸入量의 증가로 인하여 同種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國內産業에 심각한 被害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威脅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UR協定에 의하면 “國內産業”(domestic industry)이라 함은 會員國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同種 또는 직접적인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生産者 全體 혹은 同種 또는 직접적인 경쟁물품을 생산하는者들의 產出量合計가 당해물품의 國內總生産量의 주요한 부분⁹⁾을 차지하는 生産者들을 의미한다.¹⁰⁾ 여기서 國內總生産量의 주요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輸入國이 恣意的으로 해석하여 이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

다음으로 UR協定에 의하면 “심각한 被害”(serious injury)라 함은 國內産業의 중대하고 전반적인 損傷을 의미하며,¹¹⁾ “심각한 被害의 威脅”(threat of serious injury)이라함은 명백하게 급

6) 姜二秀, 對外貿易法, 貿易經營社, 1993, p.387.

7) Jackson J.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The Michie Company, 1969, 'p.558

8) Ibid., p.559.

9) “주요한 부분”(major proportion)과 관련하여 이를 計量化하여 예컨대 통상 50%이상이며 최소한 33%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計量化가 어렵다는 대부분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와 같이 규정하였다.

10)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6항 (C). UR反덤핑協定 제4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國內産業의 定義規定을 두고 있다.

박한 심각한 被害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한 被害의 威脅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않된다.¹²⁾ 이와같이 UR協定에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보다 통일적인 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각한 被害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될 객관적 기준을 규정하였다.¹³⁾

한편 輸入의 증가가 國內産業에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이 되고 있는 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主務當局은 그 産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모든 관련요인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의무에 있어서 相關상품의 輸入增加量 및 增加率,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손실, 고용 등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¹⁴⁾ 만약 이러한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輸入의 증가와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간에 因果關係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輸入의 증가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國內産業에 동시에 피해를 주고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被害를 輸入의 증가 탓으로 돌려서는 않된다.¹⁵⁾

2. 節次的 要件

(1) 會員國 主務當局의 調査

UR協定에 의하면 會員國은 自國內 主務當局이 공개되고 미리 확정된 절차에 따른 조사에 의해서만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는 모든 被害關係者에게 합리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輸入者, 輸出者 기타 被害關係人들이 증거를 제시하거나 相對方의 의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緊急輸入制限措置가 公共利益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견해를 포함한 그들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는 公聽會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主務當局은 그들의 판정과 사실 및 法の 모든 관련논점에 대하여 도달한 推論된 結論을 설명하는 報告書를 공개하여야 한다.¹⁶⁾

11)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6항(a)

12)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6항(b)

13) UR協定에서 심각한 被害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채택함에 있어서 開發途上國들은 GATT 제19조의 발동을 보다 어렵게 하기 위하여 심각한 被害의 결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에, 美國과 EU같은 先進國들은 GATT 제19조의 발동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여서는 않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국가들간에 의견대립이 심하였다 (法務部, UR協定の 法的 考察(上), 1994, PP.530~531).

14)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7항(a)

15)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7항(b)

16)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항(a)

(2) 提供情報의 秘密取扱

UR協定에 의하면 會員國 主務當局은 어떠한 情報가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조건부로 제공된 경우에 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情報는 提出者의 同意없이 공개되어서는 않된다. 한편 秘密情報를 제공하는 當事者는 비밀이 아닌 要約書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고 만약 그러한 當事者가 同情報가 요약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主務當局이 비밀취급 요구가 정당하지 않고, 關聯當事者가 情報의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로도 同情報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主務當局은 그 情報가 옳다는 것이 적절한 出處를 통해 충족하는 것으로 立證되지 못하는 한 그 情報를 자유로이 無視할 수 있다.¹⁷⁾

III. 緊急輸入制限措置의 適用限界

1. 緊急輸入制限措置의 選別適用

GATT 제19조의 緊急輸入制限措置를 特定國家의 輸入物品에 대하여 選別的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GATT 제1조의 最惠國待遇義務에 따라 無差別原則위에서 모든 國家에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일부先進國 특히 EU와 開發途上國간에 견해가 대립되어왔다.¹⁸⁾

UR협정에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가 原產地에 관계없이 輸入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最惠國待遇原則을 채택하고 있다.¹⁹⁾ 다만 數量制限時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選別適用을 허용하고 있다. 즉 쿼타(Quota)가 供給國(輸出國)들 사이에 할당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利害關係를 가진 모든 다른 會員國들과 쿼타의 割當量에 관하여 協議할 수 있으며, 만약 合意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全體 輸入量 또는 輸入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근거하여 쿼타를 해당 會員國들에게 할당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輸出國과의 協議가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Committee on Safeguards)의 주관하에

17)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항(b)

18) EU는 시장교란을 야기하는 물품 및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할 수 있게 허용하는 섬유協定에서와 같은 選別的 適用을 주장한 반면에, 開發途上國들은 緊急輸入制限措의 選別的 適用을 반대하면서 最惠國待遇의 기초위에서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法務部, 前掲書, PP.533~534).

19)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5항.

20)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9항(a).

수행되고 ①대표적 기간동안 特定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量이 相關물품의 總輸入量에 비해 불균형한 比率로 증가하고, ②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③관련물품의 모든 輸出國에게 동조건이 공평하다는 증거가 委員會에 제공되는 경우 대표적 기간동안의 輸出量이나 輸出額에 관계없이 쿼타를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¹⁾

이러한 規定은 無差別原則을 고수해온 開發途上國들의 입장과 選別適用措置를 주장해온 EU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로서 緊急輸入制限措置가 예외적인 選別適用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발동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輸出入國간에 論難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은 모든 부류의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즉 農産物의 경우에 UR農産物協定에 규정된 特別緊急輸入制限措置規定이 적용되고,²²⁾ 纖維 및 衣類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이 적용되지만 UR纖維 및 衣類協定에서 例外規定을 두고 있다.²³⁾

2.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動範圍

UR協定에 의하면 緊急輸入制限措置는 심각한 被害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構造調整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만약 數量制限이 사용되는 경우 당해조치는 다른 어떠한 수준이 심각한 被害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한 統計 이용이 가능한 지난 대표적인 3년간 輸入의 평균에 해당되는 최근기간의 수준이하로 輸入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²⁴⁾

3.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動期間

UR協定에 의하면 緊急輸入制限措置는 심각한 被害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構造調整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²⁵⁾ 다만 輸入會員國의 主務當局이 심각한 被害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緊急輸入制限措置가 필요하며, 産業이 構造調整中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하고, 기타 UR緊急

21)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9항(b), 數量制限時의 예외적인 選別適用은 심각한 被害의 威脅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2) UR農産物協定 제5조.

23) UR纖維 및 衣類協定 제2조 19항 및 20항.

24)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8항.

25)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0항.

輸入制限措置協定 제3절(讓許 및 其他義務의 水準)과 제4절(開發途上國家)의 規定들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總發動期間은 暫定措置의 적용기간과 緊急輸入制限措置의 最初 적용기간 및 연장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²⁷⁾ 다만 開發途上國의 경우 最大發動期間 8년을 넘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²⁸⁾

措置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곤란한 긴급한 상황하에서 輸入의 증가가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豫備決定에 따라 暫定措置를 취할 수 있으며, 暫定措置期間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²⁹⁾

4.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再發動禁止

UR協定에 의하면 WTO設立協定の 發效日 이후 취해진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대상이었던 물품의 輸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緊急輸入制限措置가 취해졌던 기간만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再發動하지 못하며, 再發動禁止期間은 최소한 2년으로 한다. 다만 180일 이내의 短期間 동안의 緊急輸入制限措置는 ①特定物品의 輸入에 대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가 취해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②조치가 취해진 날 이전 5년의 기간동안 同一物品에 대하여 2번 이상 緊急輸入制限措置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再發動할 수 있다.³⁰⁾

한편 開發途上國의 경우 WTO設立協定の 發效日 이후 緊急輸入制限措置가 적용된 물품의 輸入에 대하여는 同措置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간이 최소한 2년을 경과하였다는 조건하에 當該措置가 종전에 적용되었던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緊急輸入制限措置를 再發動할 수 있다.³¹⁾

위와같은 規定은 원칙적으로 최소한 2년동안은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再發動을 금지함으로써 輸入國의 빈번한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을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短期間의 緊急輸入制限措置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再發動을 허용하는 융통성을 보임으로써 輸出入國 모두의 입장을 다소 공평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26)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1항

27)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2항

28)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0항

29)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4항

30)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5항(a)(b)

31)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0항.

3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UR總點檢—最終協定の 分野別評價, 1993.12, P 213

IV.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形態

1. 本來的 意味의 輸入制限措置

國內産業의 심각한 被害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輸入制限措置에는 GATT 제 1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①輸入國이 부담하는 GATT義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留保 예컨대 쿼타형태의 數量制限, ②關稅讓許의 철회 또는 수정 예컨대 關稅의 인상 등 2가지 조치가 있다.³³⁾

위와같은 2가지 조치가운데 어떤조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UR協定에서는 會員國들은 심각한 被害의 방지나 구제의 목적달성에 가장 적당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³⁴⁾ 會員國들은 선택에 裁量을 가진다. 다만 暫定輸入制限措置의 경우에는 主務當局이 조사결과 輸入의 증가가 國內産業에 심각한 被害를 주거나 被害의 威脅이 있다고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 신속히 還給할 수 있도록 關稅引上의 형태로만 취해져야 한다.³⁵⁾

한편 UR協定에 의하면 쿼타형태의 數量制限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하려는 會員國은 관련물품을 공급하는 실질적 利害를 가진 모든 다른 會員國들과 쿼타의 割當에 合意를 모색할 수 있고, 이러한 合意方法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때에는 關聯會員國은 중전의 대표적 기간동안 당해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실질적 利害가 있는 會員國들에 의해 공급된 물품 輸入의 全體數量 또는 價格의 比率에 근거하여 當該會員國에게 쿼타량을 割當할 수 있으며, 당해물품의 交易에 영향을 주었거나 주고 있는 어떠한 특별한 要因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

2. 産業構造調整促進措置

産業構造調整促進措置라함은 종래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단순히 國內産業을 긴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國內産業의 構造調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서 UR協定에서 이를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論難이 있었다.³⁷⁾

33) Steward T.P. and Brilliant M.A., Safeguards, in . Stewart T.P.(ed),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1986-1992), Vol.II : Commentary,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P.1724.

34)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8항.

35)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4항.

36)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9항(a).

37) 國內産業調整促進措置를 UR協定에서 채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EU는 채택에 찬성한 반면에, 美國과 日

UR協定에 의하면 會員國들은 國內産業의 構造調整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에 가장 적당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³⁸⁾ 또한 産業構造調整을 촉진하기 위하여 會員國이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통고한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예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同措置는 적용기간 동안 일정간격을 두고 점차 완화되어야 하고, 同措置의 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에는 同措置를 적용하는 國家는 조치기간의 중간시점에 상황을 재검토하여 적절하다면 同措置를 철회하거나 완화의 속도를 加速化해야 하며, 同措置의 적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同措置의 최초기간 만료시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되며 계속 완화되어야 한다.³⁹⁾

위의 UR協定の 規定에 의하면 會員國은 國內産業의 構造調整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數量制限이나 關稅引上 또는 補助金을 이 용할 수 있는 裁量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융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⁴⁰⁾

3. 灰色措置의 撤廢

灰色措置(Grey-area Measures)라 함은 國內産業이나 國內市場을 보호할 목적으로 GATT規 範 밖에서 실시되는 輸入制限措置로서 일반적으로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s : VER)나 市場秩序協定(Orderly Marketing Agreements : OMA) 또는 유사한 조치⁴¹⁾등을 말한다. 이러한 灰色措置는 GATT規範밖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 國家로부터 어떠한 補償이나 報復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며, 그 적용기간에 있어서도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利點이 있으므로 많은 國家들이 GATT 제19조의 緊急輸入制限措置보다는 灰色措置를 더 많이 이용하여 왔다.⁴²⁾

그러나 UR協商에서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은 先進國들이 開發途上國을 상대로 讓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灰色措置를 濫用하여 왔음을 지적하면서, GATT規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일정기간내에 철폐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UR協定에서 會員國은 GATT 제19조의 規定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⁴³⁾ 나아가

본은 채택에 반대하였다.(法務部, 前掲書, P.539)

38)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8항.

39)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3항.

40) Stewart T.P.and Brilliant M.A., op. cit., P.1195.

41) 유사한 조치의 例로는 輸出調節, 輸出價格 또는 輸入價格 監視制度, 輸出 또는 輸入監視, 強制的 輸入 카르텔, 恣意的 輸出 또는 輸入許可制度, 그리고 보호를 제공하는 어떠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2항(b) 註4).

42) 1991년 GATT報告書에 의하면, 당시 GATT 제19조에 따라 실시중인 緊急輸入制限措置는 총24건인 반면에, 發效中인 灰色措置協定은 총284건이었다.

43)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2항(a).

會員國은 輸出 또는 輸入側面에서 輸出自律規制, 市場秩序維持協定 또는 다른 유사한 어떤조치를 모색하고, 취하거나 또는 유지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조치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會員國들에 의한 協約, 協定 및 諒解下의 조치뿐만 아니라 一方會員國에 의한 조치들도 포함시켰으며, WTO設立協定 發效日에 유효한 그러한 특정조치들은 UR協定에 일치시키거나 또는 철폐하도록 하였다. 44)

한편 灰色措置의 철폐는 WTO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180일 이내에 關聯會員國들이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제시한 日程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日程表들은 輸入會員國別로 존속기간을 199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단하나의 특별조치를 제외하고는 WTO設立協定 發效日 이후 4년 이내에 철폐되거나 UR協定과 일치하도록 작성되어야만 하고 WTO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90일 이내에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통고되어야 한다. 45) 이와같은 灰色措置의 철폐이외에 會員國은 灰色措置에 相應하는 非政府的 措置가 公·私企業에 의해 채택되는 유지되는 것을 권장하거나 지지해서는 않된다. 46)

4. 開發途上國에 대한 優待

UR協商에서 開發途上國들은 자신들이 보다 낮은 피해기준을 근거로 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開發途上國들에 대하여는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적용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결과 UR協定에서 開發途上國 會員國이 原產地인 물품에 대하여는 輸入會員國에서 開發途上國 會員國의 관련물품의 輸入比率이 3%를 초과하지 않고, 이와같이 3%미만의 輸入比率을 차지하는 開發途上國 會員國의 輸入比率의 합계가 관련물품의 全體 輸入의 9%를 넘지 않을 경우에 당해물품에 대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가 적용되어서는 않된다 47) 는 구체적 적용면제의 기준을 설정하여 開發途上國들을 優待하고 있다.

5. 既存 緊急輸入制限措置의 撤廢

UR協定에 의하면 會員國들은 GATT 제19조에 따라 취해졌던 모든 緊急輸入制限措置들을 당해 조치가 최초 적용된 날로부터 8년 이내 또는 WTO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5년 이내 가운데 늦게

44)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2항(b).

45)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2항(c).

46)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4항.

47)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9항.

도래하는 기간내에 종료시켜야 한다.⁴⁸⁾ 이러한 조치는 일부 先進國들에 의해 장기간 발동중인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일정기간내에 철폐하도록 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V. 緊急輸入制限措置의 補償 및 報復

1. 緊急輸入制限措置 發動國에 의한 補償

GATT 제19조 및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에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이 濫用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해조치의 적용을 받는 輸出國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한 輸入國으로 하여금 당해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輸出國에 대하여 貿易補償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輸出國으로 하여금 당해조치를 발동한 輸入國의 貿易에 대해 상응하는 報復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⁴⁹⁾ 이와같은 補償 및 報復權은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國家들에게 강력한 對應手段을 제공해주게 된다.

GATT 제19조에는 緊急輸入制限措置 發動國의 補償措置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해석론상 發動國은 자신의 緊急輸入制限措置의 對價로서 다른 讓許를 제공할 수 있으며, 協議當事國들도 發動國이 제공하는 補償의 讓許를 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⁵⁰⁾

UR협정에 의하면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會員國은 당해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輸出會員國과 自國間에 존재하는 GATT讓許와 기타 의무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關聯會員國들은 그들의 貿易에 대한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貿易補償方案에 관하여 協議할 수 있다.

51) 여기서 發動國의 補償措置에는 당해 輸出國으로 부터 發動國에 輸入되는 다른 물품에 대한 關稅引下 또는 市場接近의 확대 등이 이에 속한다.⁵²⁾

48)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1항.

49) UR協商에서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있어서의 補償 및 報復規定을 둘러싸고 國家들간에 論難이 있었으나, 대부분 國家들은 補償 및 報復權이 어떤 형태로든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만 이러한 報復措置가 政府들로 하여금 灰色措置의 이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法務部, 前掲書, PP.547~548).

50) Jackson J.H., op.cit., P.565.

51)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6항.

52) Stewart T.P. and Brilliant M A, op.cit., P 1749.

2. 緊急輸入制限措置 被發動國에 의한 報復

GATT 제19조에서도 緊急輸入制限措置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締約當事國으로 하여금 당해조치에 대한 報復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한편 UR協定에 의하면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國家와 相關상품 輸出會員國간의 協議에서 30일내에 合意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緊急輸入制限措置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輸出會員國은 商品交易理事會(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의하여 당해 讓許停止의 書面通告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후에 그리고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한 會員國의 貿易에 대하여 1994년 GATT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응한 讓許나 기타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商品交易理事會는 이러한 중지예 반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⁵³⁾

또한 緊急輸入制限措置가 發效한 처음 3년동안에는 緊急輸入制限措置가 輸入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발동되었고 당해조치가 UR協定에 부합되는 경우 讓許나 기타 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권리 즉 報復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⁵⁴⁾

이러한 규정은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최초 발동후 3년간 被發動國은 報復을 금지시킴으로써 이 기간동안 發動國은 補償없이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결과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빈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다.

VI. 緊急輸入制限措置의 一般節次

1. 通告 및 協議

(1) 通告

UR協定에서는 緊急輸入制限節次에 있어서 透明性を 提高시키기 위하여 通告義務를 강화하고 協議要件을 부과하였다. 즉 會員國은 ①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과 相關한 조사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② 증가된 輸入으로 인한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에 관한 判定, ③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적용 또는 연장에 관한 결정 등의 사실을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Committee on

53)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7항.

54)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8항.

Safeguards)에 통고하여야 한다.⁵⁵⁾

한편 上記 ② 및 ③항의 통고를 함에 있어 會員國은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는 輸入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에 관한 증거, 정확한 대상품목의 설명, 계획하고 있는 조치, 조치의 적용일자 및 예정시간, 점진적인 자유화 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조치를 연장코자하는 경우에는 關聯産業이 構造調整中이라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商品交易理事會(Council for Trade in Goods) 또는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는 동조치를 발동 또는 연장코자하는 國家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⁵⁶⁾

會員國은 暫定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하기 전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⁵⁷⁾ 또한 會員國은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발동이나 연장에 대한 協議結果, 國內産業構造調整促進을 위한 조치에 대한 중간검토 결과, 緊急輸入制限措置의 發效國에 의한 補償形態 및 被發動國에 의한 讓許와 기타의무의 정지 등 報復措置들을 즉시 商品交易理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⁵⁸⁾

會員國들은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련된 그들의 法, 規程, 行政的 節次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신속히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통고하여야 하고,⁵⁹⁾ UR協定에 의하여 통고되어야 할 것으로 該當 會員國이 통고하지 아니한 이 協定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法, 規程, 行政的 節次 및 어떠한 조치도 다른 會員國이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통고할 수 있으며,⁶⁰⁾ 어떠한 會員國도 公·私企業에 의하여 유지 또는 채택되는 非政府的 灰色措置를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통고할 수 있다.⁶¹⁾

UR協定 發效日에 존재하는 GATT 제19조에 따라 발동했던 緊急輸入制限措置 및 灰色措置들을 유지하고 있는 締約國들은 당해조치를 WTO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60일 이내에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통고하여야 한다.⁶²⁾ 한편 UR協定에서의 通告에 관한 規定은 會員國에게 法이나 公共利益에 反하거나 특정 公·私企業의 正當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⁶³⁾

55)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5항.

56)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6항.

57)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8항.

58)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9항. 商品交易理事會에 대한 通告는 일반적으로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4항)

59)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2항.

60)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2항.

61)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3항.

62)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5항.

63)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1항.

(2) 協議

UR協定에 의하면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 또는 연장코자 하는 國家는 相關상품 輸出國으로서 실질적인 利害를 가지고 있는 會員國에게 相關정보 즉 輸入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에 관한 증거, 정확한 대상품목의 설명, 계획하고 있는 조치, 조치의 적용일자 및 예정 기간, 점진적인 자유화 일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조치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緊急輸入制限措置 發動會員國과 당해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輸出會員國간에 존재하는 1994년 GATT讓許와 기타 의무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한 방법 즉 貿易補償方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事前協議를 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⁶⁴⁾

2. 監視

UR協定에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지속적인 監視와 檢討를 수행하기 위하여 商品交易理事會 산하에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를 설치하여, 同委員會에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會員國들을 참가할 수 있게 하고, 同委員會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① 本協定の 일반적인 이행에 관하여 감시하고 商品交易委員會에 매년 보고하며 協定の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 ② 緊急輸入制限措置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會員國의 요청에 따라 本協定の 질차상 요건들이 특정 緊急輸入制限措置와 관련하여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商品交易理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③ 會員國의 요청이 있는 경우 本協定の 規定에 따라 수행하는 會員國들간의 協議에 대해 會員國들을 지원하는 것, ④ 既存 緊急輸入制限措置 및 灰色措置의 검토, 당해조치의 폐지에 대한 監視 및 商品交易理事會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⑤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한 會員國의 요청에 따라 동조치로 영향을 받은 會員國이 행한 讓許나 기타 의무의 중지 즉 報復措置를 위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商品交易理事會에 적절히 보고하는 것, ⑥ 本協定에 규정된 일체의 通告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商品交易理事會에 적절히 보고하는 것, ⑦ 商品交易理事會가 결정할 수 있는 本協定과 相關있는 그밖의 다른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이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의 기능으로 되어 있다.⁶⁵⁾

한편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가 수행하는 監視機能을 지원하기 위하여 WTO事務局으로 하여금 通告나 이용가능한 그밖의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本協定の 운영에 관한 事實報告書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였다.⁶⁶⁾

64)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7항.

65)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6항.

66)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7항.

3. 紛爭解決

UR協定下에서 발생하는 協議와 紛爭의 해결에 대하여는 “紛爭 해결을 규율하는 規則 및 節次에 관한 諒解”(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의해 규정되고 적용된 바와같이 1994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⁶⁷⁾

Ⅶ.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1.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UR緊急輸入制限措置 協商過程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항은 緊急輸入制限措置의 選別適用과 灰色措置撤廢에 관한 문제이었다. 그러므로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가운데 특히 選別適用과 灰色措置撤廢에 관한 規定이 우리나라에 미칠 影響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⁸⁾

첫째,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에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적용에 있어서 最惠國待遇 즉 無差別待遇原則을 준수하되 數量制限時에 예외적 選別適用 즉 選別的 쿼타 감축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選別的 쿼타 감축은 대표적 기간동안 特定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량이 당해물품의 總輸入량에 비해 큰 비율로 증가할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先進國에의 輸出依存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요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後發開發途上國에 비해 先進國內에서 높은 市場占有率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選別的 쿼타감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輸出量이 정체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緊急輸入制限措置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輸出品目에 대한 輸出擴大戰略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에서는 灰色措置를 撤廢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그동안 先進國에 의한 灰色措置의 주요 對象國이었음을 감안할 때, 동조치의 撤廢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先進國에 비해 協商력이

67)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38항.

68) 對外經濟政策研究員, 前掲書, PP.217~218참조.

약한 우리나라로서는 灰色措置의 撤廢에 따라 兩者間協商에 의해 불리한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위와같은 選別適用의 인정여부와 灰色措置撤廢이외에 그밖의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の 諸規定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만족할 정도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혹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緊急輸入制限措置 運用慣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의 對應方案

WTO體制的 출범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現行 對外貿易法上的 緊急輸入制限措置制度⁶⁹⁾를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과 일치되도록 개선하여 輸入增加에 따른 國內産業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 바, 그 구체적인 對應方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⁰⁾

첫째, 緊急輸入制限措置 발동요건상의 因果關係를 對外貿易法에 명시하여야 한다.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7항은 緊急輸入制限措置 발동요건으로 輸入增加와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간의 因果關係의 객관적 證明을 요구하고 있으나, 對外貿易法 제32조에는 輸入增加와 産業被害간의 因果關係에 대한 規定이 없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緊急輸入制限措置에 대하여 相對當事國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對外貿易法에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과 같이 因果關係 規定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⁷¹⁾

둘째, 對外貿易法上的 暫定輸入制限措置의 發動형태를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과 일치하여야 한다.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4항은 暫定輸入制限措置의 發動형태로서 關稅引上만을 허용하고 있으나,⁷²⁾ 對外貿易法 제35조에는 關稅率調整, 數量 및 品質制限, 輸入의 禁止 및 中止 등 3가지 發動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對外貿易法의 暫定輸入制限措置의 發動형태를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과 같이 關稅引上만이 기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對外貿易法上的 救濟措置 發動기간을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과 일치시켜야 한다.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10항 내지 제12항에는 救濟措置의 發動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하

69) 우리나라 現행 緊急輸入制限措置는 對外貿易法 제32조 내지 제43조에서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救濟制度"로서 규정되어 있다.

70) 韓國貿易協會, WTO體制에 대비한 貿易制度 改編方案, 1994.8., PP.17~25 참조

71) 美國通商法 제201조는 輸入增加가 심각한 被害 또는 被害의 威脅의 "相當한 原因"(substantial cause)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2) 關稅引上만을 暫定輸入制限措置로 인정하는 이유는 輸入增加가 國內産業에 被害를 주거나 被害의 威脅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引上한 關稅를 신속히 還給하기 위한 것이다.

되, 産業이 構造調整中인 경우에는 최대한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여기에다 開發途上國인 경우에는 2년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對外貿易法施行令 제72조는 救濟措置中 數量制限의 경우에만 발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최대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關稅引上 등의 조치의 발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緊急輸入制限措置발동시 救濟措置의 형태에 관계없이 救濟措置期間을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하되, 최대한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對外貿易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當事國과의 協議節次를 對外貿易法에 명시하여야 한다.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7항은 緊急輸入制限措置를 발동하거나 救濟措置期間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輸出國과 協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對外貿易法에는 緊急輸入制限措置와 관련된 주요내용에 관하여 利害當事國과의 協議節次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緊急輸入制限措置 運用에 대한 대외적인 公信力提高와 救濟措置의 발동에 따른 通商摩擦의 예방 등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하여 救濟措置期間, 救濟內容, 補償 및 構造調整措置 등에 관한 輸出國과의 協議節次를 對外貿易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輸出自律規制 등 灰色措置를 철폐하여야 한다.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 제22항 내지 제23항에서는 輸出自律規制(VER), 市場秩序維持協定(OMA) 또는 유사한 조치 등 輸出入關聯 灰色措置를 WTO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4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輸出入公告 등에 의한 輸出自律規制 및 數量制限 등은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에서 규정하고 있는 灰色措置에 해당되므로 WTO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4년 이내에 철폐 및 180일 이내에 자유화 등의 日程表를 緊急輸入制限措置委員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 輸出入制限의 實益이 적은 非協定自律規制는 조속히 폐지하고 政府 또는 業界간의 協定에 의한 自律制限品目⁷³⁾은 關聯國과의 協議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VIII. 結 論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는 특정물품의 輸入增加로 輸入國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國內競爭産業이 심각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73) 우리나라의 輸出自律規制品目은 HS6단위 기준 180개품목으로 이중 政府間協定에 의한 自律規制品目은 20개, 業界間協定에 의한 自律規制品目은 17개, 非協定自律規制品目은 143개이다.

GATT締約國의 대응조치로서, 輸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은 國內競爭産業에 적절한 構造調整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當該産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資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는데 그 意義가 있으며, 反덤핑이나 相計關稅와는 달리 公正한 貿易慣行에 대한 輸入制限措置이므로 그 발동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UR協商이 1986년 9월에 개시되어 1994년 4월15일에 UR最終協定文에 124個國이 署名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는데,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商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비록 예외적인 選別適用의 인정이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選別適用도 WTO體制內的 多者間規範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하며 灰色措置를 철폐하도록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UR協商過程中서 우리나라는 緊急輸入制限措置의 被發動國의 입장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UR最終協定文이 마련된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도 發動國의 입장에서 새로운 UR緊急輸入制限措置協定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對外貿易法상의 緊急輸入制限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하여는 이미 위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나, 그밖에 몇가지 우리의 政策方向을 제시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貿易委員會는 緊急輸入制限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産業被害 救濟機關으로 개편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貿易委員會를 商工資源部로 부터 독립시켜 大統領直屬의 準司法機構로 확대 개편시켜 그 位相을 提高시켜야 하고, 둘째 緊急輸入制限措置는 公正貿易에 대한 규제인바, 救濟措置 발동시 産業被害判定 및 救濟措置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救濟措置의 決定權者를 현행 關係行政機關의 長에서 大統領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셋째 緊急輸入制限措置의 限時性을 감안하여 國內의 産業被害를 예방할 수 있도록 國際競爭에서 比較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産業構造調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先進國이나 開發途上國 또는 後進國을 막론하고 無限競爭을 극복하고 市場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國家競爭力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WTO體制의 출범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海外市場 진출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外國의 市場開放요구로 부터 國內市場을 방어하기 위해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生産性低下와 賃金上昇 등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탈피하여 尖端産業을 중심으로한 技術 및 資本集約的 産業으로의 投資를 증대해야 하는 동시에 既存産業의 技術高度化와 高附加價値化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仁卿, 貿易摩擦과 GATT(三宅正太郎 著), 高麗苑, 1986.
- 姜二秀, 對外貿易法, 貿易經營社, 1993.
- 徐憲濟, 通商問題와 法, 栗谷出版社, 1994.
- 申有均, 新國際經濟秩序, 韓國貿易經濟, 1993.
- 朴晚承·王載烈·朴基洪, GATT를 中心으로한 國際貿易秩序의 展開方向과 우리의 對應,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1984.
- 蔡旭,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的 改善과 活用方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政策研究 91-12, 1991.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UR總點檢—最終協定の 分野別評價, 1993. 12.
- 經濟企劃院, 우루과이라운드最終協定文, 1993.
- 法務部, UR協定の 法的考察(上)(下), 1994.
- _____, UR協定 關聯資料集, 1994.
- 韓國貿易協會, GATT解說, 1988..
- _____, UR最終協定文, 1994.
- _____, 對外貿易法令集, 1994.
- _____, 우루과이라운드協定 分野別 內容과 影響, 1994.
- _____, WTO體制에 대비한 貿易制度 改編方案, 1994.
- Jackson J.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The Michie Company, 1969.
- Stewart T.P. and Brilliant M.A., Safeguards, in : Stewart T.P.(ed.), The GATT Uruguay Round : A Negotiating History(1986-1992), VOL. II : Vol. II: Commentary,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 Ginzberg Ezra, An Analysis of Article XIX : The Safeguard Problem after the Uruguay Round, Nebraska Law Review, Vol. 71, 1992.